해운대 디 엘본 오피스텔 분양광고

- ■ [코로나19 관련 견본 오피스텔 운영여부 및 관련 유의사항 추가] (상황 해제 시 까지)
- • 본 오피스텔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 오피스텔 관람 사전 예약을 통한 방문과 홈페이지(www.해운대디엘본.com)를 함께 운영 할 예정입니다.
- • 본 오피스텔은 시행위탁자 홈페이지(www.해운대디엘본.com)를 통해 분양일정, 청약안내 및 상품안내 등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견본 오피스텔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지역사회 확산 및 정부 ·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시행조치에 따라 예약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체(시행위탁자와 시행수탁자를 총칭하며 이하 같음)의 결정으로 폐쇄될 수 있습니다.
- • 견본 오피스텔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 견본 오피스텔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 비접촉 체온측정기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 소독 발판, 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 할 경우
-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오피스텔 청약 및 추첨, 당첨자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 본 오피스텔은 2021년 01월 01일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본 분양광고를 숙지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본 오피스텔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내용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본 오피스텔의 경우 청약자 '만 나이' 요건 기준일은 최초 분양광고일(2022.03.24) 기준입니다.
- ■ 거주자 우선 분양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분양 호실의 10%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을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 중 부산광역시 거주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분양 합니다.
  - ※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 전 관련서류(주민등록표 등 · 초본 등) 검토 후 분양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 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며, 거주자 우선분양이 적용됩니다.
- ■ 청약자격 : 본 오피스텔은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중복청약 유의사항 : 본 오피스텔은 1인당 각 군별 1건씩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동일인이 동일군에 2건이상 청약신청하는 경우 중복 청약신청 군은 무효처리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분양권 전매 : 전매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민 · 형사상, 세무상, 기타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본 오피스텔의 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는 최초 분양광고일(2022.03.24)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9조의3 제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전매가 가능합니다. 단, "계약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긴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제10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시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에 따른 승인 신청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금융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간의 증거서류(대출승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출 원리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 위반행위 관련 계약취소 및 벌칙사항 :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을 받거나 전매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라도 관계법령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특히 전매제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 잔여호실 분양 : 정당계약 이후 미계약 잔여호실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분양될 예정입니다.
-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 의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2022-건축과-분양신고 3호, 2022.03.22]로 분양신고 필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2021-건축과-신축허가-65] 허가(변경) 완료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 597-4, 598-6번지

▣ 공급대상물
- • 대지면적 : 1,056.00㎡(319.44평) • 건축물 연면적 : 13,915.70㎡(4,209.50평)
- • 건축물 층별 용도 : 지하2층-주차장, 펌프실 및 지원시설/지하1층-주차장, 기계실 및 지원시설/지상1층-로비 등/지상2~3층-업무시설 및 지원시설/지상4~29층 업무시설
- • 공급규모 : 지하2층 ~ 지상29층 1개동 중 업무시설(오피스텔) 98실 • 주차대수 : 109대(자주식 4대, 기계식 105대)

▣ 건축물의 대지에 관한 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 지구 : 일반상업지역, 방화지구, 소로1류(폭 10M~12M)
나.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 지구 : 가축사육제한구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제한지역(150m이하), 온천지구
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 : 해당없음
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 상대보호구역

▣ 내진성능 확보 여부 : 확보 / 내진설계 등급 : Ⅶ-0.224g등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참조)

▣ 준공예정일 : 2024년 03월 / 입주예정일 : 2024년 06월 예정(준공예정일 및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통보)

▣ 공급대상 및 공급규모(타입별 모집의 경우)

[단위 : ㎡, 실]

군	타 입	공급호실(수)	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공용면적	소 계			
1군	54A형	13	54.18	32.03	86.21	11.95	98.16	7.30
2군	81B형	1	80.93	44.26	125.19	17.84	143.04	10.90
3군	83C형	27	83.69	46.13	129.82	18.45	148.28	11.27
	83D형	28	83.85	46.03	129.88	18.49	148.38	11.30
2군	84E형	2	84.79	48.68	133.47	18.70	152.17	11.42
4군	84F형	27	84.33	46.49	130.82	18.60	149.42	11.36

※ 상기 건축물의 면적, 대지지분 등은 건축(변경)허가 조건 또는 설계변경 및 준공처리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적합산시 소수점 3자리에서 단순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2자리로 산정하였으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4F 타입의 일부 호실(1호라인, 동향)은 측면 창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거주자 우선 분양
- • 본 오피스텔의 공급지역(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의거 건축물 분양분의 100분의 10이하의 범위에서 분양신고일(2022.03.22, 분양광고일과 다름) 현재 그 건축물의 건설지역 거주자(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있는 법인 포함)로서 청약신청한 자에게 1인당 1실을 기준으로 우선분양 합니다.
- • 부산광역시 거주자는 청약신청 시 거주자 우선분양으로 청약해야 우선분양 대상자로 선정되며, 1인당 1개군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 • 거주자 우선분양 신청자 중 당첨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반공급 청약자에 포함 됩니다.
- • 거주자 우선분양 당첨자는 계약체결 전 관련서류(주민등록표 등 · 초본 등) 검토 후 분양신고일(2022.03.22, 분양광고일과 다름)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자가 아닌 경우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군	타 입	공급호실(수)	신청유형 호실수		비고
			거주자 우선분양	일반공급	
1군	54A형	13	1	12	주민등록등본상 부산광역시 거주자 우선 당첨자 선정
2군	81B형	1	0	1	
3군	83C형	27	2	25	
	83D형	28	3	25	
2군	84E형	2	2	0	
4군	84F형	27	2	25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군	타입	층	라인(호수)	공급호실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물비	부가세	계	계약시(정액제)	계약 후 20일이내	1회(10%) 2022.06.15	2회(10%) 2022.10.15	3회(10%) 2023.02.15	4회(10%) 2023.06.15	5회(10%) 2023.10.15	6회(10%) 2024.02.15	입주시(입주지정 기간내)
1군	54A	2~3	7호	1	151,000,000	179,000,000	17,900,000	347,900,000	10,000,000	24,790,000	34,790,000	34,790,000	34,790,000	34,790,000	34,790,000	34,790,000	104,370,000
		4~5	7호	1	153,000,000	181,000,000	18,100,000	352,100,000	10,000,000	25,210,000	35,210,000	35,210,000	35,210,000	35,210,000	35,210,000	35,210,000	105,630,000
		6~7	7호	1	155,000,000	183,000,000	18,300,000	356,300,000	10,000,000	25,630,000	35,630,000	35,630,000	35,630,000	35,630,000	35,630,000	35,630,000	106,890,000
		8~9	7호	1	157,000,000	186,000,000	18,600,000	361,600,000	10,000,000	26,160,000	36,160,000	36,160,000	36,160,000	36,160,000	36,160,000	36,160,000	108,480,000
		10~11	7호	1	160,000,000	189,000,000	18,900,000	367,900,000	10,000,000	26,790,000	36,790,000	36,790,000	36,790,000	36,790,000	36,790,000	36,790,000	110,370,000
		12~13	7호	1	162,000,000	192,000,000	19,200,000	373,200,000	10,000,000	27,320,000	37,320,000	37,320,000	37,320,000	37,320,000	37,320,000	37,320,000	111,960,000
		14~15	7호	1	165,000,000	195,000,000	19,500,000	379,500,000	10,000,000	27,950,000	37,950,000	37,950,000	37,950,000	37,950,000	37,950,000	37,950,000	113,850,000
		16~19	7호	2	167,000,000	197,000,000	19,700,000	383,700,000	10,000,000	28,370,000	38,370,000	38,370,000	38,370,000	38,370,000	38,370,000	38,370,000	115,110,000
		20~23	7호	2	168,000,000	199,000,000	19,900,000	386,900,000	10,000,000	28,690,000	38,690,000	38,690,000	38,690,000	38,690,000	38,690,000	38,690,000	116,070,000
		24~25	7호	1	169,000,000	200,000,000	20,000,000	389,000,000	10,000,000	2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38,900,000	116,700,000
		26~27	7호	1	170,000,000	201,000,000	20,100,000	391,100,000	10,000,000	29,110,000	39,110,000	39,110,000	39,110,000	39,110,000	39,110,000	39,110,000	117,330,000
2군	84E	24~27	8호	2	349,000,000	414,000,000	41,400,000	804,400,000	10,000,000	70,440,000	80,440,000	80,440,000	80,440,000	80,440,000	80,440,000	80,440,000	241,320,000
	81B	28	7호	1	345,000,000	409,000,000	40,900,000	794,900,000	10,000,000	69,490,000	79,490,000	79,490,000	79,490,000	79,490,000	79,490,000	79,490,000	238,470,000
3군	83D	2~3	4호, 5호	2	336,000,000	399,000,000	39,900,000	774,900,000	10,000,000	67,490,000	77,490,000	77,490,000	77,490,000	77,490,000	77,490,000	77,490,000	232,470,000
	83C	2~3	6호	1	336,000,000	399,000,000	39,900,000	774,900,000	10,000,000	67,490,000	77,490,000	77,490,000	77,490,000	77,490,000	77,490,000	77,490,000	232,470,000
	83C	4~5	2호	1	338,000,000	401,000,000	40,100,000	779,100,000	10,000,000	67,910,000	77,910,000	77,910,000	77,910,000	77,910,000	77,910,000	77,910,000	233,730,000
			6호	1	340,000,000	403,000,000	40,300,000	783,300,000	10,000,000	68,330,000	78,330,000	78,330,000	78,330,000	78,330,000	78,330,000	78,330,000	234,990,000
	83D	4~5	4호, 5호	2	340,000,000	403,000,000	40,300,000	783,300,000	10,000,000	68,330,000	78,330,000	78,330,000	78,330,000	78,330,000	78,330,000	78,330,000	234,990,000
	83C	6~7	2호	1	342,000,000	405,000,000	40,500,000	787,500,000	10,000,000	68,750,000	78,750,000	78,750,000	78,750,000	78,750,000	78,750,000	78,750,000	236,250,000
			6호	1	344,000,000	407,000,000	40,700,000	791,700,000	10,000,000	69,170,000	79,170,000	79,170,000	79,170,000	79,170,000	79,170,000	79,170,000	237,510,000
	83D	6~7	4호, 5호	2	344,000,000	407,000,000	40,700,000	791,700,000	10,000,000	69,170,000	79,170,000	79,170,000	79,170,000	79,170,000	79,170,000	79,170,000	237,510,000
	83C	8~9	2호	1	348,000,000	412,000,000	41,200,000	801,200,000	10,000,000	70,120,000	80,120,000	80,120,000	80,120,000	80,120,000	80,120,000	80,120,000	240,360,000
			6호	1	350,000,000	414,000,000	41,400,000	805,400,000	10,000,000	70,540,000	80,540,000	80,540,000	80,540,000	80,540,000	80,540,000	80,540,000	241,620,000
	83D	8~9	4호, 5호	2	350,000,000	414,000,000	41,400,000	805,400,000	10,000,000	70,540,000	80,540,000	80,540,000	80,540,000	80,540,000	80,540,000	80,540,000	241,620,000
	83C	10~11	2호	1	353,000,000	419,000,000	41,900,000	813,900,000	10,000,000	71,390,000	81,390,000	81,390,000	81,390,000	81,390,000	81,390,000	81,390,000	244,170,000
			6호	1	355,000,000	421,000,000	42,100,000	818,100,000	10,000,000	71,810,000	81,810,000	81,810,000	81,810,000	81,810,000	81,810,000	81,810,000	245,430,000
	83D	10~11	4호, 5호	2	355,000,000	421,000,000	42,100,000	818,100,000	10,000,000	71,810,000	81,810,000	81,810,000	81,810,000	81,810,000	81,810,000	81,810,000	245,430,000
	83C	12~13	2호	1	359,000,000	426,000,000	42,600,000	827,600,000	10,000,000	72,760,000	82,760,000	82,760,000	82,760,000	82,760,000	82,760,000	82,760,000	248,280,000
			6호	1	361,000,000	428,000,000	42,800,000	831,800,000	10,000,000	73,180,000	83,180,000	83,180,000	83,180,000	83,180,000	83,180,000	83,180,000	249,540,000
	83D	12~13	4호, 5호	2	361,000,000	428,000,000	42,800,000	831,800,000	10,000,000	73,180,000	83,180,000	83,180,000	83,180,000	83,180,000	83,180,000	83,180,000	249,540,000
	83C	14~15	2호	1	365,000,000	432,000,000	43,200,000	840,200,000	10,000,000	74,020,000	84,020,000	84,020,000	84,020,000	84,020,000	84,020,000	84,020,000	252,060,000
			6호	1	367,000,000	434,000,000	43,400,000	844,400,000	10,000,000	74,440,000	84,440,000	84,440,000	84,440,000	84,440,000	84,440,000	84,440,000	253,320,000
	83D	14~15	4호, 5호	2	367,000,000	434,000,000	43,400,000	844,400,000	10,000,000	74,440,000	84,440,000	84,440,000	84,440,000	84,440,000	84,440,000	84,440,000	253,320,000
	83C	16~19	2호	2	368,000,000	437,000,000	43,700,000	848,700,000	10,000,000	74,870,000	84,870,000	84,870,000	84,870,000	84,870,000	84,870,000	84,870,000	254,610,000
			6호	2	370,000,000	439,000,000	43,900,000	852,900,000	10,000,000	75,290,000	85,290,000	85,290,000	85,290,000	85,290,000	85,290,000	85,290,000	255,870,000
	83D	16~19	4호, 5호	4	370,000,000	439,000,000	43,900,000	852,900,000	10,000,000	75,290,000	85,290,000	85,290,000	85,290,000	85,290,000	85,290,000	85,290,000	255,870,000
	83C	20~23	2호	2	372,000,000	442,000,000	44,200,000	858,200,000	10,000,000	75,820,000	85,820,000	85,820,000	85,820,000	85,820,000	85,820,000	85,820,000	257,460,000
			6호	2	374,000,000	444,000,000	44,400,000	862,400,000	10,000,000	76,240,000	86,240,000	86,240,000	86,240,000	86,240,000	86,240,000	86,240,000	258,720,000
	83D	20~23	4호, 5호	4	374,000,000	444,000,000	44,400,000	862,400,000	10,000,000	76,240,000	86,240,000	86,240,000	86,240,000	86,240,000	86,240,000	86,240,000	258,720,000
	83C	24~27	2호	2	374,000,000	444,000,000	44,400,000	862,400,000	10,000,000	76,240,000	86,240,000	86,240,000	86,240,000	86,240,000	86,240,000	86,240,000	258,720,000
			6호	2	376,000,000	446,000,000	44,600,000	866,600,000	10,000,000	76,660,000	86,660,000	86,660,000	86,660,000	86,660,000	86,660,000	86,660,000	259,980,000
	83D	24~27	4호, 5호	4	376,000,000	446,000,000	44,600,000	866,600,000	10,000,000	76,660,000	86,660,000	86,660,000	86,660,000	86,660,000	86,660,000	86,660,000	259,980,000
	83C	28~29	2호	1	376,000,000	446,000,000	44,600,000	866,600,000	10,000,000	76,660,000	86,660,000	86,660,000	86,660,000	86,660,000	86,660,000	86,660,000	259,980,000
			6호	1	378,000,000	448,000,000	44,800,000	870,800,000	10,000,000	77,080,000	87,080,000	87,080,000	87,080,000	87,080,000	87,080,000	87,080,000	261,240,000
	83D	28~29	4호, 5호	2	378,000,000	448,000,000	44,800,000	870,800,000	10,000,000	77,080,000	87,080,000	87,080,000	87,080,000	87,080,000	87,080,000	87,080,000	261,240,000
4군	84F	2~3	3호	1	338,000,000	400,000,000	40,000,000	778,000,000	10,000,000	67,800,000	77,800,000	77,800,000	77,800,000	77,800,000	77,800,000	77,800,000	233,400,000
		4~5	1호	1	340,000,000	402,000,000	40,200,000	782,200,000	10,000,000	68,220,000	78,220,000	78,220,000	78,220,000	78,220,000	78,220,000	78,220,000	234,660,000
			3호	1	341,000,000	405,000,000	40,500,000	786,500,000	10,000,000	68,650,000	78,650,000	78,650,000	78,650,000	78,650,000	78,650,000	78,650,000	235,950,000
		6~7	1호	1	343,000,000	407,000,000	40,700,000	790,700,000	10,000,000	69,070,000	79,070,000	79,070,000	79,070,000	79,070,000	79,070,000	79,070,000	237,210,000
			3호	1	345,000,000	409,000,000	40,900,000	794,900,000	10,000,000	69,490,000	79,490,000	79,490,000	79,490,000	79,490,000	79,490,000	79,490,000	238,470,000
		8~9	1호	1	349,000,000	414,000,000	41,400,000	804,400,000	10,000,000	70,440,000	80,440,000	80,440,000	80,440,000	80,440,000	80,440,000	80,440,000	241,320,000
			3호	1	351,000,000	416,000,000	41,600,000	808,600,000	10,000,000	70,860,000	80,860,000	80,860,000	80,860,000	80,860,000	80,860,000	80,860,000	242,580,000
		10~11	1호	1	355,000,000	420,000,000	42,000,000	817,000,000	10,000,000	71,700,000	81,700,000	81,700,000	81,700,000	81,700,000	81,700,000	81,700,000	245,100,000
			3호	1	356,000,000	423,000,000	42,300,000	821,300,000	10,000,000	72,130,000	82,130,000	82,130,000	82,130,000	82,130,000	82,130,000	82,130,000	246,390,000
		12~13	1호	1	361,000,000	427,000,000	42,700,000	830,700,000	10,000,000	73,070,000	83,070,000	83,070,000	83,070,000	83,070,000	83,070,000	83,070,000	249,210,000
			3호	1	362,000,000	430,000,000	43,000,000	835,000,000	10,000,000	73,500,000	83,500,000	83,500,000	83,500,000	83,500,000	83,500,000	83,500,000	250,500,000
		14~15	1호	1	366,000,000	434,000,000	43,400,000	843,400,000	10,000,000	74,340,000	84,340,000	84,340,000	84,340,000	84,340,000	84,340,000	84,340,000	253,020,000
			3호	1	368,000,000	436,000,000	43,600,000	847,600,000	10,000,000	74,760,000	84,760,000	84,760,000	84,760,000	84,760,000	84,760,000	84,760,000	254,280,000
		16~19	1호	2	370,000,000	438,000,000	43,800,000	851,800,000	10,000,000	75,180,000	85,180,000	85,180,000	85,180,000	85,180,000	85,180,000	85,180,000	255,540,000
			3호	2	372,000,000	440,000,000	44,000,000	856,000,000	10,000,000	75,600,000	85,600,000	85,600,000	85,600,000	85,600,000	85,600,000	85,600,000	256,800,000
		20~23	1호	2	374,000,000	443,000,000	44,300,000	861,300,000	10,000,000	76,130,000	86,130,000	86,130,000	86,130,000	86,130,000	86,130,000	86,130,000	258,390,000
			3호	2	376,000,000	445,000,000	44,500,000	865,500,000	10,000,000	76,550,000	86,550,000	86,550,000	86,550,000	86,550,000	86,550,000	86,550,000	259,650,000
		24~27	1호	2	376,000,000	445,000,000	44,500,000	865,500,000	10,000,000	76,550,000	86,550,000	86,550,000	86,550,000	86,550,000	86,550,000	86,550,000	259,650,000
			3호	2	378,000,000	447,000,000	44,700,000	869,700,000	10,000,000	76,970,000	86,970,000	86,970,000	86,970,000	86,970,000	86,970,000	86,970,000	260,910,000
		28~29	1호	1	378,000,000	447,000,000	44,700,000	869,700,000	10,000,000	76,970,000	86,970,000	86,970,000	86,970,000	86,970,000	86,970,000	86,970,000	260,910,000
			3호	1	379,000,000	450,000,000	45,000,000	874,000,000	10,000,000	77,400,000	87,400,000	87,400,000	87,400,000	87,400,000	87,400,000	87,400,000	262,200,000

중도금 60% 무이자

※ 총 분양대금은 층, 향, 구조, 일조권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통사항
- • 분양공급과 관련하여 시행위탁자 홈페이지(www.해운대디엘본.com)에서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청약으로 진행합니다.
- • 총 분양대금은 층, 향, 구조, 일조권 등을 감안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분양대금은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인지세, 취득세(구. 등록세 포함)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계약금(총 분양대금의 10%) 중 1,000만원(정액제)은 계약 체결 시, 나머지 금액(총 분양대금의 10%에서 기 납부한 1,000만원을 제한 금액)은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은 지정된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입주시(입주지정기간 내)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단, 임시 또는 동별 사용승인을 득한 후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중 50%는 입주일에 나머지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 ·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연체료 및 대출이자가 발생할 경우 중도금 및 잔금보다 우선 순위로 변제합니다.
- •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중도금은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하여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2회 이상으로 구분하여 받을 수 있으며 최초로 납부하는 1차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날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오피스텔 분양대금 중 중도금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습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계약자 본인의 책임으로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오피스텔은 공동주택 발코니에 해당하는 서비스면적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 면적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 상기 실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홀 등 공용면적과 주차장, 관리실, 펌프/전기실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실별 대지지분은 오피스텔 전용면적 비율로 분할하였으며, 추후 시설별 면적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대지지분의 시설별 분할면적은 공급 당시 기준으로 합니다.(대지지분은 공부상정리 등의 사유로 전유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시기와 다를 수 있음)
- • 실별 대지지분은 면적합산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내에서 산정하였으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향후 지적확정 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지하 주차장은 오피스텔이 공용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지분별 구획 및 분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개별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 지정개시일 이후 잔금 완납 후 가능합니다.
- • 이 분양광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II 청약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청약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 본 오피스텔은「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300호실 미만일 경우 청약홈 인테넷 청약이 의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지로,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을 접수 받을 예정이며 견본 오피스텔 방문 청약은 받지 않습니다.
- • 청약신청자격 : 최초 분양광고일(2022.03.24)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
  단,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과 법인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거주 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층 · 호수는 추첨을 통해 결정합니다.
- • 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청약 신청자의 책임으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 당첨자는 개별통지하지 않으므로 당사 홈페이지(www.해운대디엘본.com) 및 견본 오피스텔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 청약 신청한 호실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접수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 • 거주자 우선분양 청약의 경우 1인당 1개군만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일반공급 청약의 경우 각 군별 1건씩 총 4건의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동일한 군에 2건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중복 청약신청 군은 무효처리됩니다.

구분	청약신청	당첨자 추첨 및 발표	계약체결
일시	2022.03.29(화) 10:00 ~ 18:00 [1일간]	2022.03.30(수) 15:00 이후	2022.03.31(목) 10:00 ~ 16:00 [1일간]
방법	인터넷 청약	추첨에 의해 호실 무작위 선정	사전 예약제 계약
장소	'해운대 디 엘본' 홈페이지	'해운대 디 엘본' 홈페이지	'해운대 디 엘본' 견본 오피스텔

※ 당첨자 추첨 및 당첨자 발표는 접수상황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본 오피스텔은 아파트 청약통장 순위와 무관하므로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및 재당첨 제한 등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청약신청금	금융기관명	청약신청금 납부계좌	예금주(분양대금 관리자)
1,000,000원	KB국민은행	945201-01-393595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 지정한 청약신청금 납부계좌에 무통장입금(청약신청자 성명 기재)하여야 유효하며, 지정한 청약신청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정당한 납부로 인정되지 않으며, 무효로 합니다.(견본 오피스텔 내 현장 수납을 받지 않습니다.)
  - ※ 입금은 청약신청자 명의로만 입금하여야 합니다.
  - ※ 견본 오피스텔에서 방문 청약접수,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오피스텔 청약 신청, 추첨, 발표 및 당첨자 공급계약 일정, 예약제 방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유의사항
- • 신청자는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시설 유무, 도로, 철도,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사업주체에게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건축물의 층수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조망권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동 · 호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 동 · 호 추첨 및 당첨자 발표 일시 : 2022.03.30(수) 15:00 이후
- • 동 · 호 추첨 및 발표 장소 : 당사 홈페이지(www.해운대디엘본.com)
- • 당첨자 선정방법 : 공정 추첨 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 및 동 · 호수 무작위 선정
- • 당첨자 확인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 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고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 •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 시「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 등을 통하여 사업주체가 수의계약 등의 방법으로 공급방법을 정하고 공급합니다.

▣ 청약신청금 환불
- • 환불일시 : 2022.03.30(수) ~ 2022.04.05(화) (7일 이내)
- • 환불대상 : 청약신청자(당첨자 포함)
- • 환불 시 청약신청금에 대한 경과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 당첨자의 청약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며, 청약 시 제출한 신청자 본인 명의 환불계좌로 이체합니다.
- • 환불계좌 명의자와 청약자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하며, 계좌오류 및 환불계좌로 인한 환불불가 또는 지연환불의 경우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III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기간 및 장소

계약체결 기간	계약체결 시간	장소	계약금 납부
2022.03.31(목) 1일간	10:00 ~ 16:00	해운대 디엘본 견본 오피스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360번지)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 기재)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서 미작성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에서 임의 분양할 수 있습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납입계좌	KB국민은행	945201-01-393595	케이비부동산신탁(주)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어 입금 후 입금증을 계약 시 견본 오피스텔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통장 입금 시 예시 : 1001호 계약자 → 1001홍길동)
-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일에 상기 해당 금융기관의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추가선택 옵션품목의 계약금 및 잔금은 납입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합니다.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계약 시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계약금은 견본 오피스텔 등 현장 수납이 불가 하오니,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 인감도장 및 계약자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 주민등록표 등본 1통(전입일 표시)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법인 계약 시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계약금은 견본 오피스텔 등 현장 수납이 불가 하오니,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사업자등록증 1통 • 법인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 법인 등기부등본 1통 • 법인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1통) • 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직원 및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 외국법인일 경우 : 관련 법률상 토지취득 허가서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체결 시 이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견본 오피스텔 내 비치) - 계약자의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국내거소신고증(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및 인장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분양광고일(2022.03.2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본인이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 건의 당첨으로 인해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해지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귀속됩니다.
-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취소 및 해약 조치합니다.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신분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취소 및 고발 조치됩니다.
- • 주변 및 인접부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소음, 진동 등),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본 부지 내 오피스텔, 부대시설 등의 배치 구조 및 층 · 호실별 위치에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 오피스텔, 평면도, 배치도 등 해당 도면의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 계약체결 후 부득이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해약하게 되는 경우 분양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 호실에 대한 면적, 공급금액 등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사업주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기타 관리비 및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르며, 계약자는 계약체결과 동시 상기 계약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중도금 대출 안내
- • 대출기관 : 추후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 • 대출금액 : 시행위탁자가 지정하여 공지한 금융기관에서 중도금(총 분양대금의 60%범위 내) 대출을 지원할 예정임.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또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가능 여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향후 견본 오피스텔 또는 시행위탁자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임.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정부정책, 금융기관, 시행위탁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사업주체의 부도 ·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적격 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시행위탁자 또는 시행수탁자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시행위탁자가 대납(중도금 무이자) 합니다.
- • 본 건물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 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시행위탁자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 설정 비용 등은 대출 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 조건 등은 대출 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아니하거나 대출 불가로 인한 자납 또는 목적물 인도 지정기간 전에 받은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는 등의 이유로 시행위탁자에게 대출이자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매수자)는 그 금액(중도금 대출이자)을 사업주체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 본 분양광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분양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 • 계약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제2항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긴 경우 동법 제6조의4에 따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동법 제10조 제2항 제5호에 의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형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분양권 전매는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시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에 따른 승인 신청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았을 경우, 금융기관이 발행한 전매 당사자 간의 증거서류(대출승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출 원리금을 금융기관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0의2에 의해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전에 입주자 사전방문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로 통보합니다.

▣ 입주예정일 : 2024년 06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별도 통보합니다.
-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입주지정기간에는 잔금에 대한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고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IV 설계 등 기타 유의사항

▣ 공통사항
- • 분양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 청약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청약신청서상 작성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됩니다.
-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 본 건축물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 본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는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79호, 2017.05.23.)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승인 후 불법구조 변경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48조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5의2 규정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보하였습니다.

유효지반가속도(S)	지반의 종류	중요도 계수(IE)	내진설계범주	건물중요도	반응수정계수(R)
0.20	S4	1.2	D	1등급	5.0

- • 본 건축물에는 내진설계가 반영되어 있으며, 건축구조기준(KBC2009)에 따라 메르칼리진도(MMI)등급 Ⅶ-0.224g이며, 최대지반가속도는 0.224(g)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구조설계에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실시 설계시 변경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 「건축물 내진설계기준」 및 「공동주택 성능기반 내진설계 지침」에 의거 성능기반설계를 적용하였으며, 내진등급 I등급으로서 목표성능은 인명보호수준 및 붕괴방지수준에 대하여 각각 만족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 본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부산시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따라 녹색건축인증 우량등급(그린3등급)이상,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2등급 이상과 신재생에너지 8% 이상이 적용되어 있으며, 신재생에너지는 집광채광루버를 적용하여 남측을 전면으로 하는 83C, 83D, 84F형의 거실창호 위치에 설치됩니다.
- •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관련 법령에 의해 배연창이 설치됩니다.
- • 84F형 오피스텔의 경우, 동일 타입이라도 84F형(1호라인, 동향)은 측면에 창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 오피스텔 호실 내의 내력벽체를 임의대로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불법 사항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2항에 의거한 경미한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때 계약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과세자)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만 계약금분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카탈로그 등) 및 분양 홈페이지상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조감도, 이미지,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본 오피스텔의 연출용 시공부분, 견본 오피스텔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계획, 식재, 시설물, 포장계획, 부지의 고저차 등), 공급간지, 기타 홍보물에 사용된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 오피스텔 및 사업주체에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건축물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 없이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계약체결 시 견본 오피스텔, 평면도, 배치도 등 공급현황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 본 건축물의 명칭, 동 표시, 외부색채 및 경관조명, 교통시설물 등의 계획은 현재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관계기관의 심의 및 합의결과에 따라 입주 시 분양광고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실입주일이 만료일보다 앞서는 경우 실입주일)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전기료 등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관리비예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본 건축물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 본 건축물의 공급금액은 각 호실의 타입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타입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현장여건 등 주변시설현황, 조망권, 주변개발여건, 유해시설현황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향후 미확인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일부 호실은 공사 시행 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 본인 동 · 호수 지정 시 동일타입이나 견본 오피스텔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아트월과 쇼파 설치위치가 좌우 대칭되어 외부 조망이 달라질 수 있음)이 될 수 있습니다.
- • 각 호실, 지하주차장, 지원시설, 조경공간(식재, 시설물 등), 사업지 내 · 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등은 본 공사 시 대관 인 · 허가 과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호실의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면적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 표현되었으며, 전체 연면적과 호실별 계약면적의 합과는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추후 등기를 위해 면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계약 이후 관련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 발생 시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입주 예정 호실이 동간 거리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층간, 호실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주변현황 포함)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사업지 내(지원시설, 지상돌출물, 지상 쓰레기 관련시설, 사업지 내 도로 등) 및 사업지 주변 현황 (인접 APT단지, 인접 주택단지(상가주택 포함), 주변상가, 공공청사(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등), 종교시설(교회 등), 학교, 공원, 사업지 외부도로 등)에 의한 사항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 후 사업지 주변의 개발 및 재건축 등으로 인한 주변시설(도시계획시설 포함)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 학교 배정 등 교육정책은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라야 합니다.
- • 사업지에 설치되는 지원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 견본 오피스텔 및 건축허가 승인도서(변경승인 포함)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지원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 본 건축물의 사업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 • 본 건축물 입주 후, 본 사업부지와 인접한 택지의 건축물 신축으로 인해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소유권 이전 등기 시 기계약자의 실거래필증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사오니, 분양권 전매 시 관련서류를 반드시 보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매 확인용 제출서류에 대해 복사 · 재발행은 불가 합니다.
- • 각종 광고, 홍보물(사이버 모델하우스,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내용은 보도자료 기준이며, 인허가청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시행위탁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제1항에 따른 관리의무(관리단이 구성되어 관리를 개시하기 이전)를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업체를 선정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고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집합건물법」 제24조 6항의 신고사항 포함)

▣ 견본 오피스텔 및 홍보물
- • 견본 오피스텔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사업주체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하여 일정기간 보관할 예정입니다.
- • 견본 오피스텔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 시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 견본 오피스텔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은 최종건축허가승인도서(설계변경도서 포함)에 준합니다.
- •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사이버 모델하우스, 홍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도로, 기타 공공시설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견본 오피스텔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당 견본 오피스텔 내 전시 타입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타입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견본 오피스텔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갯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공사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 견본 오피스텔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대기전력 차단스위치, 콘센트, 온도조절기, 수전류, 실외기실 루버 구동부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분양광고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 오피스텔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견본 오피스텔 내 전시 타입,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견본 오피스텔 내 전시 타입 천장 및 벽면에 일부 전시조명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세대 조명 설치 제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견본 오피스텔에 비치된 건축허가도서를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허가도서 미확인으로 인한 민원은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분		내용
일반사항		• 분양광고 및 카탈로그, 분양계약서, 각종 홍보물 등에 제시된 조감도, 타입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관련 법규(「건축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동의하며, 제반 권리를 발주처에 위임함, 다만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공사 중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축물 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필로티(옥외계단 및 캐노피 등), 창틀모양 및 색, 건축물 색채디자인], 색채를 포함한 난간의 디테일 및 높이, 주차관리실, 지원시설, 옥상 지붕프레임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 이미지 및 모형에 표시된 사업지 내·외부 디자인은(색채, 입면, 마감재, 조경, 측벽 그래픽, 사인, 기단부, 기타 외부사항 등)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의 구조개선을 위해 관계법령의 허용범위 내에서 경미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한 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축물의 현장여건 및 기능,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차장법」 등)에서 정하는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발주처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계약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호실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현장여건 등을 위하여 주차관리실, 주차 게이트, 도로 선형 변경 및 기타부대시설의 추가 및 삭제, 위치이동, 형태 등이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는 굴토 후 지내력 검사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원시설,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사업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 관련 시설물(수목, 시설물, 조경시설, 포장 등), 사업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조경석 쌓기 포함)의 형태, 공법,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에 따라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내 레벨은 건물입구 및 인접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 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사업지 내 조경식재, 야간조명 및 경관조명, 측면 로고설치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 일체의 비용은 관리규약에 따르며, 사업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사업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등)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 지하주차장, 지원시설 등의 휀룸, 실외기실, 배기탑 및 제연휀룸,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결과에 따라서 시공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계획 변경과 조경계획의 변경(분양자료에 따른 변경 포함)등으로 인한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조경, 건축물의 외관 등의 부분에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조경계획은 주민공동시설의 실외기 설치 및 안테나,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주변 외부도로의 폭은 인접 건축물, 보도 등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외부 시설 및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최종 인허가 및 실시계획에 따라 최종 설치될 예정입니다. • 경관조명 등 사업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사업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적용시) 유지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인접 동 및 인접 호실에 의해 각 호실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 오피스텔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 인접 호실에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색채 및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전유리난간대가 설치된 발코니 창호는 이삿짐 사다리차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사 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사업지 주출입구, 지원시설, 주차출입구, 사업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호실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대지 안의 공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을 향상하기 위하여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간의 이격으로 확보되는 공지로 일부 구간 인근주변 주민들의 보행이 가능하게 설계적용 될 수 있습니다. • 지하1층에 계획된 전기실, 발전기실 등으로 인하여 인접 호실의 소음, 진동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미술작품 설치 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미술작품을 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2항에 따라 건축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대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의 엘리베이터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접하거나 또는 인접한 호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 기계식주차기가 2개소(B2~1F_카트파킹, B2~22F_타워파킹) 설치되며, 기계식주차기가 인접한 호실을 포함하여 일부호실에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소방성능위주설계 심의기준에 따라 오피스텔 상부층 복도에 면하는 침실에 화재시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이 설치됩니다.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2층~23층 공용복도 창호에 소방대 진입창이 설치되며, 외부에서 주야간 식별이 가능한 표시가 될 예정입니다. • 사업지 주변도로와 인접한 호실은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다소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분양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 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 사업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이동통신설비 설치 예정 위치 : 지하1층(MDF 1개소), 지상15층(TPS 1개소) • 당 사업지와 인접하여 해운대제일장로교회 및 해운대파크애비뉴(오피스텔) 등이 위치하여 채광 및 조망,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중앙이 분리되어 있는 각 4m, 6m폭의 일방통행 도로로 입주 후 차량 증가, 주변 여건 등에 의해 진출입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인해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지 내부에 공공으로 사용하는 공개공지가 설치되며, 이는 입주자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 및 폐기물 보관소는 1층에 1개소 설치되며, 오피스텔 폐기물 보관소 분리 등을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단지	공통사항	• 본 계약물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의 신축, 사업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사업지 내 설치되는 옹벽,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본 공사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배치상 호실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사업지 주변 경계부는 현장 시공여건, 현황 레벨, 인근 도로레벨에 따라 단차부 마감에 대한 형태, 재질 등이 실시 설계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현장여건 등을 위하여 도로 선형 변경, 부대시설의 추가 및 삭제, 위치이동, 형태 등이 본 공사 시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주변도로와 사업지내 레벨차이로 인해 사업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로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호실은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조망권 및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각 동 주출입구 홀, 커뮤니티, 지붕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 발생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사업지 내 외부에 계획된 부지 레벨차이에 의한 각종 옹벽 및 조경석은 당사 디자인 계획변경에 따라 일부 수정 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는 현장여건상 문주가 설치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지상1층에 1개소가 설치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자료에 표현된 주민공동시설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표현하였으며, 형태, 크기, 규격 포장범위 및 패턴 등은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맞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또는 인접한 호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개공지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서 입주자 임의로 휀스를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및 조경물의 유지 및 관리에 발생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 또한, 외부인의 통행 및 출입이 가능하므로 소음 등에 따른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배치	• 근린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설치로 소음 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배치 특성상 사업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사업지 내 비상 차로에 인접한 저층부 호실에는 차량소음 및 전조등 등에 의한 사생활권 또는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사업지 경계부는 인근 사업지, 주변도로 및 시설 등과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지 외곽부위에 진입을 차단하는 휀스는 설치되지 않으며, 레벨차에 의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난간 등은 일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옥상층에는 입주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옥상정원 및 수영장이 설치되며, 이로인해 인접한 호실은 소음, 빛공해 등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주동	• 각 호실의 창, 공용부 창의 열림 방향 및 위치, 공용부 창호 프레임의 사양,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주민공동시설 실외기 설치공간 위치에 따라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저층부의 석재마감(적용시)의 디자인 및 줄눈의 간격은 디자인 및 시공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 부서 협의 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아 내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의 옥상, 동 출입구, 부대시설, 조경 구간 등 사업지 내 설치되는 난간의 형태, 높이, 재질,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골조난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로비, 필로티, 평.입면 계획(재료,디자인 등) 등은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코아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은 공사 중 설계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 난간 턱 높이조정,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각 호실 창호계획 및 공용부 창호 변경 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탑 및 옥상조형물 형태 및 마감재는 상세 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외부 입면 형태(옥상조형물, 측벽문양, 저층부 석재, 석재뿜칠, 동 출입구) 및 색채는 구조내력확보, 미관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면 차별화 및 관계기관의 심의, 현장여건에 따라 옥탑, 지붕, 외벽, 동 출입구, 경비실, 부대(지원)시설 입면, 건축물의 외벽 문양 등의 디자인 및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정한 경미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추후 변경 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TV공청 안테나 및 위성수신 안테나는 방재실과 가깝고 전파수신이 양호한 지붕(옥상)에 설치됩니다.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은 사업지 내외간의 레벨차에 의하여 일부 호실의 전·후·측면 경사면 처리 공법에 따라 옹벽, 석축, 자연경사 처리구간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지하층 내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입면 외부마감재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 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층부는 입면 디자인에 따라 석재와 뿜칠로 마감되며 일부 뿜칠 마감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대시설	•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의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등을 위하여 평, 입, 단면 창호재질 및 색상, 창호사양, 유리사양, 위치 및 개소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분양 카탈로그, 전단, 인터넷 홈페이지 등) 및 견본 오피스텔에 설치된 홍보물 상의 사업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의 형태, 색상, 패턴, 마감재는 디자인 개선, 평, 입면 변경, 시공상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 지하층의 지원시설(세대창고, 피트니스센터, 게스트하우스 등), 지붕(옥탑)의 수영장, 옥상정원 및 휴게공간 등은 입주민 공용시설로서 관리주체와의 협의에 의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 지하주차장 천장의 일부 구간은 열 관류율 기준에 의거, 단열 및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내부 색채디자인은 선원건설 De ELBON 특화 디자인 매뉴얼 기준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폭은 일반형(폭 2.5M), 장애인형(폭 3.3M)로 설치되며, 설계변경에 따른 일부 주차폭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는 2대가 지상주차장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 위치 및 형태, 사양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세대	공통	• 호실 내부 및 호실간 벽체 재질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붙박이장류(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으며, 신발장의 하부에는 열전달로 인한 뒤틀림,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난방배관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이 불가합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 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호실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다소 축소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 오피스텔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벽체 마감, 목창호 문틀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 오피스텔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침실 가구 배치 시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타입별로 제공 품목 및 선택형 제공 여부가 상이하오니 카탈로그 및 모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각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마감재 사양이 변경되어 시공됩니다. • 주동 저층부 차별화 마감 적용 시, 별도 마감적용 부위의 호실 및 공용부 창호의 폭과 높이가 마감을 위한 필요한 치수만큼 축소 또는 외부 마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호실 시공 기준 및 품질 관리, 마감 개선 검토를 위해 일부 호실은 현장 내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건축물은 호실별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지원시설 등 인접한 호실은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되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열기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호실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호실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고정형 가구 하부 및 후면, 천장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가구 하부 및 천장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지원시설 인접 및 상부층 호실은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지원시설 위층의 바닥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욕실 문턱 높이는 물 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 각 호실 내부에 시공되는 도배지의 색상에 따라 도배 조인트면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주방에 냉장고장 외 별도의 김치냉장고장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하향식 피난구가 있는 공간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하여,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해당 공간을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거나 입주자 임의로 개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남측에 면한 오피스텔(83C, 83D, 84F형) 창호 부위에 신재생에너지원인 집광채광루버가 설치됩니다. 83C타입 1개소(거실) / 83D타입 1개소(거실) / 84F타입 1개소(침실) • 당 오피스텔의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 배연창은 54A, 81B, 83C, 83D, 84E는 업무공간-1(거실) / 84F는 업무공간-5(침실)에 설치되며, 견본 오피스텔에 전시된 배연창의 개폐 형태 및 열림 방향, 창호 개폐기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배연장치 및 집광채광루버 설치로 인해 커튼 및 블라인드 설치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개별 호실 및 공용공간에 설치된 배연창은 화재 시 감지기에 의해 자동 연동되어 개폐되는 소방시설물로 유지보수 및 점검 시를 제외하고 입주자 요구나 편의를 위해 개폐할 수 없습니다. • 호실에 도시가스설비가 설치됩니다. • 호실 내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일반형 제품으로 공기청정키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설치시점에 이르러 생산단종 (제품의 품절, 품귀, 성능개선, 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 후 신모델 출시 시 동급의 사양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무선리모콘이 제공되고, 홈IOT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와이파이키트 미적용) • 본 오피스텔에 시공되는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는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연결하는 멀티형으로 본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시스템에어컨 외 개별적으로 에어컨을 설치하여 실외기실에 실외기를 2단으로 배치하는 경우 냉방효율 저하, 실외기 작동중단, 실외기 온도상승으로 인한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가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 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키친핏 냉장&냉동고 (BESPOKE)는 추후 삼성전자 내부 기준에 의거하여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욕실바닥 레벨 단차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거실의 천장고가 높고, 일부호실에는 거실 일부공간이 OPEN 되어있어 열전달 효율의 감소로 인하여 냉난방비가 더 들어갈 수 있으며, 또한 외기에 면하는 벽면, 샤시 등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호실의 마감자재 내용은 타입별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에 견본 오피스텔 및 모형, 인쇄물을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 오피스텔을 우선으로 함) • 공장생산 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됩니다. • 천연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천연자재 특성상 갈라짐 현상이 발생하며, 자연적 패턴과 색상, 결 무늬가 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Italy Ceramics Panel 마감, 현관 바닥, 거실 및 주방 바닥의 마감재는 패턴이 일정하지 않아 본 공사 시 견본 오피스텔과 마감재 패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타일과 강마루 또는 이질재가 만나는 부위는 견본 오피스텔과 다르게 별도의 줄눈재가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타일 색상 메지는 시간 경과, 현장 여건에 따라 색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외기실	• 각 층별 호실의 실외기는 건물 북측 외부 별도의 장소에 설치됩니다.
	창호	• 호실 내 및 공용부 창호의 크기, 두께, 사양, 개폐방향, 개폐범위, 창호 프레임 등은 시공 시 선정되는 제품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며, 공용부의 창호는 전체 고정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저층부 외부 석재 마감구간의 호실 및 코아부에 설치 창호는 마감 시공을 위해 일부 창호의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호실 현관의 경우 E.V홀 내부 압력을 확인하기 위한 차압측정공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도어재질은 결로 등에 대한 성능향상을 위해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호실 내부에 설치되는 철재문 및 방화문류의 설치 위치, 크기, 형태, 디테일은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창호의 열림 방향 및 규격 등은 입주자의 사용환경 및 건축물 내, 외부 마감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승인도서(변경포함) 및 모델하우스의 형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호실별, 층별, 침실별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내외부 창호의 유리사양 중 Low-E 유리의 설치 위치는 결로 및 단열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 호실 접합유리난간형 창호로 설치되며, 접합유리 난간의 높이는 실제 바닥에서부터 1.2M이상 확보하였습니다. • 접합유리난간으로 사다리차 사용이 불가하여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이사를 하여야 하며, 과도한 충격 시 접합유리난간이 파손되거나 프레임이 훼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알루미늄복합판넬 및 석재 등이 설치되는 부위에는 창호 크기 및 형태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외부 창호 및 유리창 표면 등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추가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전기 / 설비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천장점검구의 위치 및 사양,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렌지후드 상부 덕트 또는 옆 상부장에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상부 덕트의 크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각 호실 내 전기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102호) 제171조에 의거하여 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가 아닌 침실벽 등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며 분전 반의 형태, 규격, 사양, 디자인 등은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지내 전기실 및 방재실 등은 통합운영(오피스텔, 지원시설 등) 됩니다. • 월패드의 전화 수신기능은 국선전화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본 견본 오피스텔에 설치된 조명기구, 분전반, 단자함, 월패드 ,거치형 패드 및 배선기구류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호실은 가로등 및 야간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방 싱크볼의 배수구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준공 후 사업지 내 시스템 운영에 관한 발생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ex 인터넷, 홈오토 外) • 견본 오피스텔 내에서 제공하는 홈 IOT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개선 등 서비스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가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물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기계 및 전기설비 등)은 옥상 녹화에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붕(옥탑)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V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본 분양물건은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자 겸 수익자 ㈜아이엠디씨로부터 토지를 수탁받은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 및 시공사 선원건설(주) 등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방식으로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본 특약사항은 다른 일반 조항보다 우선하며, 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하고, 향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합니다.

1. 본 사업은 시행위탁자인 "㈜아이엠디씨"와 시행수탁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건축주는 시행위탁자인 ㈜아이엠디씨이고, 본 계약에 의하여 매도인 · 계약자로서의 일체의 의무는"신탁계약"의 위탁자인 ㈜아이엠디씨가 부담하며, 케이비부동산신탁㈜ 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2. 분양대금계좌로 입금(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 방식)되지 않는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유효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3. 본 공급계약 대상 재산에 대한 일체의 하자보수 책임(사용승인 전 하자 포함)은 관계 법령에 의거 시공사인 선원건설(주)이 부담하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건축물 브랜드 명칭 변경 포함 교체 시 수분양자는 사전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자는 케이비부동산신탁㈜에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입주예정자는 본 재산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형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신탁(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일부 호실에 대한 소유권이전 포함),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또는 신탁계약의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수탁자의 계약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 무도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에게 면책적으로 승계됨에 동의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공급금액이 본 사업의 토지비, 공사비, PF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합니다.
6. 분양계약체결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의거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내에 계약자의 책임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7. 본 분양물건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매도인 또는 공급자인 수탁자 케이비부동산신탁(주)는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수탁자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수탁자에게 현존하는 신탁재산의 한도 내에서 부담하며) 하자보수책임은 시공사 선원건설(주)에게, 분양대금 반환 책임 등 사업시행자의 책임은 위탁자 겸 수익자 ㈜아이엠디씨에게 있습니다.

- 이 분양광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감리자 및 감리금액(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V.A.T 별도)
건축 · 토목	㈜일신설계종합건축사사무소	343,000,000원
전기 · 통신	㈜일신전기감리	130,000,000원
소방	㈜일신이앤에프	24,000,000원

▣ 사업 관련자

구분	시행수탁자 (분양사업자 겸 분양대금 관리자)	시행위탁자	시공자	분양대행사
상호	케이비부동산신탁㈜	㈜아이엠디씨	선원건설㈜	㈜비앤지디엠씨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9 (역삼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길11, 1205호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미사리로 267-181, 4층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39, 1201호
법인등록번호	110111-1348237	110111-6168531	164811-0017025	180111-1395763

▣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표시사항
- • 사업시행방식 : 관리형 토지신탁
- • 등록업자 : 케이비부동산신탁㈜
- • 등록번호 : 서울-090057
-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 소유권 100% 확보
- • 소유권 이전 형태 : 잔금 완납 시 개별 등기
- • 해운대구청 건축과(2021-건축과-신축허가-65) 2021년 10월 12일 (건축허가 완료)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해운대디엘본.com

▣ 견본 오피스텔 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360번지

▣ 분양문의 : 1533-3885

※ 본 분양광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계약자는 필히 본 분양광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또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분양광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 오피스텔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분양광고와 분양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이 할 경우 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 오피스텔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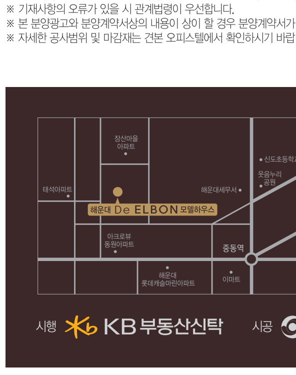

HAEUNDAE
De ELBON

모델하우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 1360번지

문의 1533-3885

시행 KB부동산신탁 시공 SUNWON SUNWON CONSTRUCTION CO.,LTD. 위탁 IMDC (주)아이엠디씨